

의안번호	2216667
의 퇴 인	황운하의원
회 답 일	2026. 3. 26.
추계번호	26B082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설치·운영,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공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6억 1,400만원(연평균 15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설치 (안 제19조의7)	47	47	47	47	47	234	47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공표 (제19조의9 신설)	790	790	790	790	790	3,950	790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 (안 제19조의10)	1,110	580	580	580	580	3,430	686
합계	1,947	1,417	1,417	1,417	1,417	7,614	1,523

주: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사업의 실시방법 및 관련 사업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의7(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 설치 등) 신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1.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함(제2항)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대표하는 위원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의무규정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음(제4항)	의무·재량 규정
2	안 제19조의9(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및 지급)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생활물류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택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모든 화물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 품목	의무규정
3	안 제19조의10(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의 지급 및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19조의7(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제19조의9(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및 지급) 신설	○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3	안 제19조의10(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 신설	○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 설치(안 제19조의7)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이하 “적정배달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위원 수) 개정안에 따른 적정배달료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13명으로 가정함
 - 유사 사례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민간위원은 13명으로 구성
 - 개정안은 적정배달료위원회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위원회의 구성 여부 및 회의 개최 횟수, 민간위원 수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 제외

- **(회의개최 횟수)** 회의개최 횟수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 1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국토교통부는 적정배달료위원회의 회의는 연 12회(월 1회) 개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임
-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안전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¹⁾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적정배달료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3,400만원(연평균 4,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적정배달료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적정 배달료 위원회	민간위원 수(A, 명)	13	13	13	13	13	—	—
	회의개최 횟수(B, 회)	12	12	12	12	12	—	—
	회의참석 사례금 (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
	소계(D=A×B×C, 백만원)	47	47	47	47	47	234	47

주: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운영 시기,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나.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공표(안 제19조의9)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품목에 대한 적정배달료를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 및 연구용역 사업비 등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유사 사례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예산(운송원가 조사 및 안전운임 산정)을 참고하여 연간 7.9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이때, 연구용역비 등 사업비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유사 사례로 국토교통부는 매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산정을 위해 운송원가 조사 및 안전운임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연간 7.9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3] (유사 사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운송원가 조사 및 안전운임 산정 예산 편성 현황: 2026년

구 분	내 용
편성 내역	• 운송원가 조사비: 2.9억원 - 현황(운송업체·차주) 조사: 2.4억원, 첨단자료기반 조사 및 분석: 0.5억원 • 원가산정 및 타당성 분석 : 2억원 - 원가작성 방법 고도화: 0.6억원, 원가산정 및 회계적 타당성 분석: 1.4억원 • 위탁연구용역비: 3억원 - 책임연구원 1인(0.3억원), 연구원 3인(1억원), 보조원 3인(0.7억원) - 직접경비 및 일반관리비: 1억원
합 계	7.9억원

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운송원가 조사 및 안전운임 산정은 매년 실시
 자료: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품목에 대한 적정배달료를 정하여 공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9억 5,000만원(연평균 7억 9,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공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적정배달료 공표	790	790	790	790	790	3,950	790

주: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안 제19조의10)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 및 신고센터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유사 사례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관련 예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센터 운영비)을 참고하여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11.1억원, 시스템 운영 등 위탁운영비 5.8억원(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시스템 구축은 추계기간 첫 해인 2027년 실시·완료하며, 시스템 운영 및 신고센터 운영은 2028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이때, 시스템 운영 및 센터 위탁운영비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유사 사례로 국토교통부는 2027년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센터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편성할 예정임

[표 5] (유사 사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센터 운영 예산 편성 계획(안)

• 화물차 안전운임신고센터 구축 : 11.1억원('27)
- H/W 인프라 구축 1식 × 1.8억원 = 1.8억원
- AP 운영 시스템 개발 1,231FP × 605,784원 = 7.5억원
- 시스템 감리 1식 × 1.8억원 = 1.8억원
• 위탁운영비('27년 ~) : 연간 5.8억원
- 시스템 운영 비용 1식 × 2.5억원
- 신고센터 위탁운영 비용 1식 × 3.3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4억 3,000만원(연평균 6억 8,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시스템 구축	1,110	-	-	-	-	1,110	222
위탁 운영	-	580	580	580	580	2,320	464
합 계	1,110	580	580	580	580	3,430	686

주: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시스템 구축 및 위탁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사업의 실시방법 및 관련 사업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